

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

- 탈세 없는 부동산 시장,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. -

- 부동산 탈세는 부모·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,
 -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.
 - 또한,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·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.
 -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,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.
- 이에 국세청(청장 임광현)에서는 「부동산 탈세 신고센터(10.31. 개통)」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
 - 개통 이후 현재(3월말)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
 - 양도세,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, 실제 접수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.

|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 |

- ◆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
- ◆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
- ◆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
- ◆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,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
- ◆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제보한 사례

-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,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.
- 한편,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[붙임2]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.

| 포상금 지급 (최대 40억원 한도) |

| 탈루세액 등 | 지급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| 100분의 20 |
|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| 1억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|
|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3억 2,500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|
| 30억원 초과 | 4억 2,500만원 +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|

- 국민들이 제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거 부동산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.

—【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】—

사례1 허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

- ▶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
- ▶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**관련인 진술서**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**비과세를 부인**하고 양도소득세 ○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,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○천만 원 지급

사례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

- ▶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
- ▶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**계좌거래내역, 계약서**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○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,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○억 원 지급

사례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

- ▶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
- ▶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**판결문**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○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,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○천만 원 지급

-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.
- 특히,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, 가격담합,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,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되,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| 책임자 | 과 장 | 오은정 (044-204-34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양창호 (044-204-3417) |



참고 1 「부동산 탈세 신고센터」 주요내용

□ 탈세제보 대상

- 부동산 거래 과정(취득, 보유, 양도 등)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

|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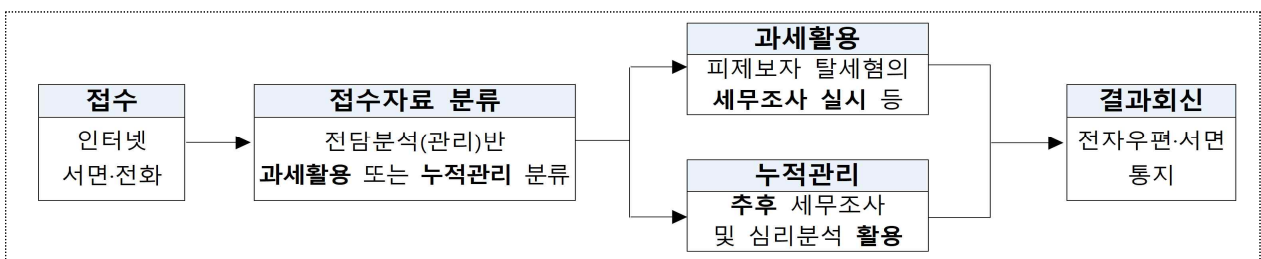
- ①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
-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
- ③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
-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
- ⑤ 세대분리·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
- ⑥ 거래취소,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

□ 탈세제보 방법

-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, 서면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

| 구 분 | 접수 방법 |
|-----------|---|
| · 인터넷 | ▶ 홈택스-상담제보-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(또는 홈택스-부동산 탈세 신고센터) |
| · 전화(ARS) | ▶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(국번 없이 ☎126-4) |
| · 서면 | ▶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,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|

□ 탈세제보 처리절차



□ 탈세제보 포상금

- 제보자가 「중요한 자료」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

< 중요한 자료 >

- ▶ 조세탈루, 부당 환급·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·장소
- ▶ 기타 탈루수법, 내용,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

참고 2

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자료 판단기준*

*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

- ①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
- ②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·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- ③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

| 구분 | 중요자료 해당하는 경우 | 중요자료가 아닌 경우 |
|---------|---|--|
| 내부문서 | 조세 탈루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, 품의서, 전표, 계정별 원장, 기타 자료로 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 | |
| 거래장부 | 거래처, 거래일, 거래기간, 거래품목, 거래수량,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, 일별·월별 매출현황표, 매출장부, 매입장부,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, 매출누락, 가공경비 계상, 가공세금계산서 발행·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| |
| 자료 소재정보 |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| '재무팀 사무실'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|
| 원시자료 | ERP자료, 매출·매입 데이터자료, 미수채권 상세 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| |
| 계약서 등 |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, 합의서, 확인서 등으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, 거래금액, 거래기간,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| 본인의 실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계좌번호를 제출하고 타 임차인들의 임차료 추정액을 작성 제출한 경우 |
| 금융거래 자료 |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, 거래금액, 거래상대방,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|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경우 |
| 공문서 | 판결문,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,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,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,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|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 |
| 기타 |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,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| |